

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(위법성검토요원) 모집 안내

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. 10. 16.(수)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사이버 상 선거범죄 예방·단속업무를 지원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(위법성검토요원)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채용인원 : 3명

2. 근무기간 : 2024. 9. 24(화) ~ 2024. 10. 16.(수, 선거일)

3. 근무처 :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(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, 4층)

4. 담당업무 : 수집된 인터넷게시물의 「공직선거법」 위반 여부 검토, 허위사실 공표 등 사이버선거범죄 조사·조치 관련 위법성 검토 지원,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답변(안) 작성 등

5. 지원자격

- 특정 정당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
- 법학전공 학위 소지자 또는 휴학 중인 자
 - ※ 법학전문대학원 졸업(예정)자 또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우대
 - ※ 변호사의 경우, 요청 시 「변호사법」 제21조의2에 의한 법률사무종사확인서 발급
-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·직원과 혈연·지연 등 연고관계가 없는 자
- 표준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

-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 -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○ 가점 사항

| 구 분 | | 부가 점수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법정 가점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「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~10% |
| 사회 형평 가점 |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|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% |

- ※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,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(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).
- 또한,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%를 초과할 수 없음
- ※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.
- 단,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 없이 적용함

6. 서류접수

가. 제출기간 : 2024. 9. 6.(금) ~ 2024. 9. 15.(일) ※마감일 18:00까지 제출

나. 제출방법 : 전자우편(necseouljido@nec.go.kr)으로 제출

다. 제출서류

| 제출시기 | 제출서류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|------|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서접수 시 | 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, 학력·경력 등 증명서, 자격증 등 ※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감점 처리 | | | | | |
| |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제출대상</th> <th>제출서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가점 대상자</td> <td> ① 법정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※ 가점 비율 필수 기재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 </td> </tr> <tr> <td>※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제출대상 | 제출서류 | 가점 대상자 | ① 법정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※ 가점 비율 필수 기재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 | ※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|
| | 제출대상 | 제출서류 | | | | |
| 가점 대상자 | ① 법정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※ 가점 비율 필수 기재 ②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(지원서 접수시 제출 가능) 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- 다문화가족 :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· 가족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· 부모 또는 배우자(귀화 허가를 받은 자) 명의의 기본증명서(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) ·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(결혼이민자) | | | | | |
| | ※ 가점사항 증명서 미제출 시 전형별 가점 등 미반영 | | | | | |
| 최종합격자 발표 후 (근로계약 시) | ○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 ○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| | | | | |

7. 선발방법 : 서류심사 후 합격자 대상 개별 면접심사

가. 서류심사 : 2024. 9. 19.(목) (적격자 중 채용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)

※ 심사종료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

※ 합격자 대상 면접시각장소 등 개별 통지(문자 또는 전화)

나. 면접심사 : 2024. 9. 20.(금)

※ 09:30부터 조 편성에 따라 순차 실시

8. 최종합격자 발표 : 2024. 9. 23.(월)까지

※ 위원회 홈페이지에 합격자명단 게시, 합격자 대상 개별 통지(문자 또는 전화)

- ※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허위경력, 정당가입사실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
- ※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(최종합격자와 함께 공고)

9. 대우 및 근무조건

가. 수당·실비 : 1일 당 128,820원(식비 포함)

나. 근무시간 : 국가공무원 정규근무시간(평일 오전9시~오후6시, 8시간)

- ※ 선거상황 및 예방·단속활동 업무에 따라 근무시간범위(1일 8시간) 내에서 근무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시간외, 휴무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할 수 있음

10. 유의사항

가. 채용비리 관련
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「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」 제33조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
나. 기타 유의사항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부모직업, 가족관계,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(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)
- 응시원서 기재 누락, 연락 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(전형 응시 불가)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,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발생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- 면접전형 참여 시 신분증 원본* 지참 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 - * 기간만료 전 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,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(사진 포함, 유효기간 내)
-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 무투표 등으로 감시·단속업무가 소멸되는 경우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-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-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(☎02-744-1390)에 문의

2024. 9. 6.

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

